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52호(2021) 관련)

2022. 2. 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4:10~18:16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6호 회피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252호(2021) 『○○○○(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난 증선위 이후 추가 제출한 소명과 관련하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분된다는 점입니다. 본 건 거래에 대한 금감원이 주장하는 ▲▲▲의 저가매도를 방지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반드시 고의범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있고 그 불법성도 부정거래행위 수준에 미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 경우 본 건 거래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등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결국 고의가 없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정거래행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본 건의 경우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을 의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불법성의 정도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제176조의 제1항의 고의목적, 제2항의 유인목적이 없기 때문에 시세조종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국에서 주장하는 일반주주에게 주식 매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임. 검사국은 ▲▲▲의 매도주문 및 ◆◆◆◆(주), ○○○○○(주)의 체결률에 비해 일반주주의 매매 체결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일반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임. ○○○○(주)은 자기주식 취득 기간 중 126일 동안 20,000주 내지 60,000주의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냈음. 특히, ▲▲▲의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매수주문을 많이 내어 일반주주의 매도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음.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체결률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시가에 매도하지 않고 시가보다 고가에 매도주문을 내었기 때문에 체결되지 않아 체결률이 낮은 것이지, ○○○○(주)의 일반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임. 마지막으로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내용임. 제재처분인 침익적 행정행위는 형사제재와 동일하게 입증책임이 검사기관인 금감원에 있다고 할 것임. 미공개중요정보 생성시점과 관련하여 금감원에서는 아무런 입증 없이 1차 자기주식취득이 종료되는 날을 생성시점으로 주장하고 있음. 1차 자기주식 취득 종료 후 ▲▲▲이 추가매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취득할 것인지의 여부를 3월23일 이사회 개최 후 결정하였음. 즉, 2차 자기주식 취득은 3월23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미공개중요정보도 해당 이사회 결의 즈음에 생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본 건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가 유가증권의 거래여부, 거래시점, 거래량,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만일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면 다른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영향을 미쳐야 함. 하지만 본 건은 별개의 거래로 매도하였던 증권을 다시 매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매수조건들과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 요소가 된 바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 부정거래행위가 아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한다면 규제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 (진술인) 저희가 볼 때에는 선대 회장님께서 이 위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통정매매에 대한 보충적 규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정매매는 매수인·매도인 둘 다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매수를 하는 주체의 상대방인 매도자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자본시장법 체계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문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맞음. 우선적으로 이것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구성요건만 보면 시장질서 교란 행위,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측면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좀 더 보강해서 형사처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좀 더 보강해 주신 후에 저희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향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있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일반적인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제178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